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81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유동수・양정숙・전혜숙

최종윤・김병욱・박 정

박성준・윤재갑・야전비

강병원 · 김회재 · 김경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두고 위반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.

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또는 회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됨.

따라서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, 선거운 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회원의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 회합의 금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수정함(안 제22조제2항제5호).
- 나.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(안 제22조제4항).
- 다.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신설함(안 제22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5호 중 "정관으로 정하는"을 "선거운동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임원의 선거운동 방법,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"을 "제 3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"으로, "정관으로"를 "행정안전부령으로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22조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 ①	제22조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	②
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	
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	
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	
없다.	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정관으로 정하는</u> 기간 중에	5. <u>선거운동</u>
회원의 호별(사업장을 포함	
한다)로 방문하거나 특정장	
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, 비용	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	<u>등에 관한 세부적인행</u>
<u>관으로</u> 정한다.	<u>정안전부령으로</u>
<u><신 설></u>	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
	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
	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
	있다.